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종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966

발의연월일: 2025. 2. 7.

발 의 자:이종배・이종욱・김성원

서천호 · 성일종 · 김위상

엄태영 · 진종오 · 김재섭

신동욱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의 원장(이하 "원장"이라 함)은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 또는 정책에 관하여 건의할 수 있고, 한국소비자원 내 소비자안전센터가 소비자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위해정보를 분석하여 원장에게 보고하면 원장은 그 분석결과에 따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조치·제도개선을 건의할 수 있음.

그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장의 건의사항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어 건의의 실효성이 낮으므로, 이를 제고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 기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원장이 제도·정책적 건의 내용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정조치·제도개선 건의내용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, 소비자정책위원회가 해당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행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는 경우에 추가 규정하여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 책 개선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25조제2항 각 호 및 제35조 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2항 중 "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한 법령·고시·예규·조례 등에 대하여"를 "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법령·고시·예규·조례 등이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 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한 경우
- 2. 제35조의2에 따라 원장이 보고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행이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5조의2(보고) 원장은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을 건의하거나 제52조제2항제4호에 따라 시정조치 ·제도개선을 건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하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5조(정책위원회의 기능 등) ①	제25조(정책위원회의 기능 등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② 정책위원회는 소비자의 기	②다음 각 호의
본적인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	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
한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한 법	<u> </u>
령ㆍ고시ㆍ예규ㆍ조례 등에 대	
<u>하여</u>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	
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령의	
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	
수 있다.	
<u><신 설></u>	1. 법령・고시・예규・조례 등
	이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
	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
	다고 평가한 경우
<u><신 설></u>	2. 제35조의2에 따라 원장이 보
	고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
	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
	<u>우</u>
③ ~ ⑦ (생 략)	③ ~ ⑦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제35조의2(보고) 원장은 제35조제
	1항제1호에 따라 소비자의 권
	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을 건
	의하거나 제52조제2항제4호에

따라 시정조치·제도개선을 건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